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기본계획 신설〉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435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기본계획 신설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43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0.

(3) 회 부 일 : 2025. 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3조의3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기본계획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4항), 조사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u>보수 수준</u>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생략) <u><신설></u>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근로여건, 보수 수준</u> ----- ----- ----- -----. ⑤ (현행과 같음) <u>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및 보수 실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기본방향

3.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u>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제3조의3(처우개선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4(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 -----<u>시·도지사</u>----- ----- ----- ----- -----.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¹⁾,

같은 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제3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011년 법 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4차례 실시되었음.

< 제3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 >

항목	조사내용
일반현황	조사 대상시설 및 종사자의 현황
보수수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율
근로여건	취업규칙, 퇴직금, 휴가, 승진, 시간 외 근무,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 등
기타	역량개발 현황, 종사자 권익 보호, 처우개선 욕구 등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제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현행법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에 대한 별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체계 및 과학적 정책 실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동법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라 함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³⁾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에서 계획 수립의 주기만 달리한 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중복되는 문제와 함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다만,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개정안의 기대효과로 보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년)에서 9개 중점과제 중 '④품질관리 강화' 내 '제공인력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보수·업무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 등 서비스 제공과정의 권익침해에 대한 보호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음.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3조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초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해에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와 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태조사의 내용이 당해연도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의 최초 시행연도를 달리 정하거나, 주기를 달리 정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효과적인 치우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사자 치우개선 기본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종사자 치우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종사자 치우개선 정책은 여러 기본계획에 분산하여 작성하기보다는 종합계획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내에서 사회서비스 확충·품질관리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책 통일성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다루는 기본계획의 성격과 예산의 편성·집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을 작성·운용하기에 3년은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다음 계획에 환류하기에 짧은 기간으로 다수의 다른 기본계획과 같이 5년 주기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7